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6호 2017. 2. 10(금)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321호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322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남원시 조례 제1323호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남원시 조례 제1324호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남원시 조례 제1325호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 41

훈령

- 남원시 훈령 제374호 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 45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7-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55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7-197호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60
- 남원시 공고 제2017-213호 2017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68
- 남원시 공고 제2017-214호 2016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70
- 남원시 공고 제2017-225호 공인 등록 및 폐기공고 ----- 72
- 남원시 공고 제2017-230호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공고----- 74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321 호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제1항 중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을 “다음”으로, “대하여 시장의”를 “대하여 심의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수립시 개최하고”를 “수립, 재정투자사업심사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중 “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예산 총괄업무 담당주사가”를 “예산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 ----- ----- <u>필요한</u> ----- -----.</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u>선출한다</u>.</p>	<p>② ----- ----- <u>호선(互選)</u> 한다.</p>
<p>③위원은 <u>관련업무 국장, 실·과장과 시의회 의원 및 지역인사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u>.</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남원시의회의 의원,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p>	<p>제3조(임무) ① -----</p>

총괄하고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수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

②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

제4조(기능) ----- 다음 -----

----- 대하여 심의 및 -----
-----.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 회의에 부치는 -----

제5조(임기) 위원중 관련업무 국장,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생략)

②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생략)

<신설>

제7조(투자심사위원회) ①위원회 의 기능중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립, 재정투자사업심사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
-----.

③ -----
----- 해당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은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투자심사위원회) <삭제>

②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③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삭 제>

<삭 제>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 예산담당이 -----
 -----.

② -----
 ----- 운영 -----

 -----.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 보

<p><u>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 ----- <u>필요한</u> ----- -----.</p>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322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항으로서”를 각각 “사항으로써”로, 같은 호 중 “비밀로서”를 “비밀로”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획득하기”를 “받기”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영위하여”를 “하여”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그 이외의”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을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을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사사로운”을 “개인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에”를 “내에”로, “전화·전보 그 외의”를 “전화, 그 밖의”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를 “사람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를 “겸임업무의 복무는”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를 “기관에 파견 근무 하는 사람의 복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게 된”을 “해당 하는 행위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복무에 관하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복무에 관한”을 “복무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이”로, “잔무처리상”을 “잔무처리를 위하여”로, “15일을 한도로”를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해서는”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9조 제2항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전단 중 “인하여 휴직”을 “휴직”으로, “대하여 다음과”을 “다음과”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유

로 인한”을 “사유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상으로 인한”을 “부상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하여 직무를”를 “직무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얻을”을 각각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

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인하여 피해”를 “피해”로,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을 “따른 수업휴가를 받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산

제23조 제13항제2호 중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장기재직휴가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적은 문서를 작성 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번에에”를 “번에”로,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 가능”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되지 않는”으로, “검직하고자 할 때”를 “검직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29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지</u> <u>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남원시</u> <u>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u>----- -----.</p>
<p>제2조(복무선서)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 서문에 <u>의한다</u>. ③ (생 략)</p>	<p>제2조(복무선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따른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 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 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창의와 <u>성실로서</u> 맡은 바 책 임을 완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책임완수) ----- ----- ----- ----- <u>성실로써</u> ----- --.</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u>자</u>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법령에 <u>의하여</u> 비밀로 지정 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 행에 관련된 <u>사항으로서</u> 외부 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p>	<p>제3조의2(비밀엄수) ----- ----- <u>사람은</u> ----- ----- ----- ----- ----- 1. ----- <u>따라</u> ----- ----- 2. ----- ----- <u>사항으로써</u> --- ----- -----</p>

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조(근검·절약)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3. -----
----- 사항으로써 -----

4. -----
----- 사항으로써 -----
----- 비
밀로 -----

제5조(친절·공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받기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근검·절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여 -----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

등 -----

② -----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
-----.

③ -----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

④ ----- 필요한 -----

-----.

제8조(출장공무원) ① -----

개인적인 -----

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
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
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
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
독을 받는다.

② (생략)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
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
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
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②

내에

전화, 그 밖의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사람의

복무는

겸임업무의 복무는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기관에 파견근

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②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② (생략)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

-----.

③ -----

복무는-----

복무는-----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 공무원이 -----
----- 잔무처리를 위하여 ---
----- 15일
의 범위에서 -----
-----.

제18조(연가일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에게-----

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2.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에게-----

-----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우-----

⑤ (현행과 같음)

⑥ -----

유로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
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
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
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
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
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
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
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 연
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
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
다.

④ (생략)

----- 한정
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휴직한-----

----- 다음과-----

----- 따라-----

③ ----- 사유에 따
른-----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

제21조(병가) ① -----

-----.

---- 부상에 따른 -----

-----.

1. -----

--- 직무를----- 경

우

2. 감염병-----

----- 경우

② -----

필요로 하는 -----

-----.

③ -----

붙여야 -----.

제23조(특별휴가) ① -----

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
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
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
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
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전에 휴
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
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
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용 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담당·주무급 이상의 자는
제외)

- 받을 -----.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
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
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
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
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
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
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
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5. (생략)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

----- 받을 -----.

-----.

④ -----

----- 받을 -----

-----.

⑤ ----- 유산

-----.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략)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⑫ (생략)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부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 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총괄 부무담당부서의 장은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 피해를-----

----- 5일 이
내-----
받을 -----.

⑩ -----

----- 수업휴가를 받을-----
-----.

⑪·⑫ (현행과 같음)

⑬ -----

-----.

- 1.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산
- 2. -----

----- 장기
재직휴가 신청
- 3. -----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받은-----

----- 적은 문서를 작성 보관

4. -----

----- 번에 --

----- 사용 가능

제27조의2(겸직허가) ① -----

----- 해당되지 않

는 ----- 겸직하

려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

- 필요한-----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323 호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

제3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제1호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남원시 도시개발조례 제5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 원 시 청	남원시 시청로 60
운봉읍사무소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주천면사무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61
수지면사무소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23-10
송동면사무소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6
주생면사무소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821
금지면사무소	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917-27
대강면사무소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5
대산면사무소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6
사매면사무소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9-4
덕과면사무소	남원시 덕과면 덕과월평길 3
보절면사무소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17
산동면사무소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19
이백면사무소	남원시 이백면 입촌길 16
인월면사무소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아영면사무소	남원시 아영면 유곡로 728
산내면사무소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동충동주민센터	남원시 향단로 86
죽향동주민센터	남원시 비석길 72
노암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소리길 10
금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가방뜰길 8
왕정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성황단길 7
향교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봉맞1길 10
도통동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역재3길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u>남원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제6조에 따라</u> ---- ----- <u>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u> -----.</p>
<p>제2조(소재지) 남원시청, <u>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u></p>	<p>제2조(소재지) ----- <u>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324 호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원목공예”를 “남원 옷칠 목공예”로, “목공예산업”을 “옷칠 목공예산업”으로, “전국목공예대전”을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전국목공예대전”을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으로,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을 “「제 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전국목공예대전”을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대전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공예관련”을 “옷칠 목공예관련”으로, “구성하
 되,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
 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전국목공예대전”을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으로, “이내”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재위촉 할”을 “재위촉할”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
 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
 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
 친 경우

제8조 제1항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
 에는”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중 “수상작품은 창작·실용부문으로 하며,”를 “수상작품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출품하고자 하는”을 “출품하려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 원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그 작품”을 “작품”으로, “낙선될 때에는 그”를 “낙선된 때에는”으로, “찾아가야”를 “작품을 찾아가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관단체에게”를 “주관단체에”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목공예</u>의 대외적 홍보와 경쟁력제고 등 <u>목공예산업</u>의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u>전국목공예대전</u>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개최) ①남원시 <u>전국목공예대전</u>(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 명칭은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이라 한다.</p> <p>② (생 략)</p> <p>제3조(주최 및 주관) ① (생 략)</p> <p>②주관 단체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대전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남원시 <u>전국목공예대전</u>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u>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남원 옷칠 목공예</u>----- --- <u>옷칠 목공예산업</u>----- ----- <u>전국 옷칠 목공예대전</u> ----- -----.</p> <p>제2조(개최) ① ----- <u>전국 옷칠 목공예대전</u>----- ----- ----- 「제 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주최 및 주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전국 옷칠 목공예대전</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제4조(조직) ① ~ ③ (생략)

④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생략)

제5조(운영위원회) ①시장은 효율적인 대전운영을 위하여 대전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주관단체 대표, 남원시의회 의원, 대전업무담당부서장, 공예 및 디자인 전공 대학교수, 지역 목공예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 (생략)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2. (생략)

3. 그 밖의 대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 ①시장은 공정

제4조(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우에는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① -----
----- 운영위원회-----

----- 호선(互選)한다.

② -----

옷칠 목공예관련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6조(심사위원회) ① -----

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6명 이내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생략)

③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연도 대전의 작품전시가 종료될 때까지이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심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명을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

- 이내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재위

촉할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8조(심사결과 보고) ①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작품) ①수상작품은 창작·실용부문으로 하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 특선으로 한다. 다만, 수상작은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심사결과 보고) ① -----

----- 붙여 -----
-----.

② -----
----- 경우에는 -----
-----.

제9조(수상작품) ① 수상작품은 -----

-----.

②·③ (생략)

제11조(출품료) ①대회장은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품료는 장학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

② (생략)

제12조(출품원서) ①대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작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낙선작품의 반품) ①출품인은 그 작품이 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될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 일부터 7일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

②대회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작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출품료) ① -----

----- 경우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출품원서) ① -----
출품하려는 -----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낙선작품의 반품) ① -----
-- 작품-----
----- 낙선된 때에는 -----

----- 작품을 찾아가야 -----.

② -----

----- 등은 -----
-----.

제15조(수당 등) -----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에게는 -----

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주관단체에게 대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비 지원) ----- 주관단체에 -----
-----.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칙) -----
--- 필요한-----
-----.

(별지 제1호 서식)

출 품 원 서

접수번호 :

출 품 자	주 소		전 화	
	성 명		휴 대 폰	
	생 년 월 일		이 메 일	
	공동 제작자		직접스승	
작 품 명 세	작 품 명			
	원 자 재			
	부 자 재			
규 격	크 기	(가로 × 세로 × 높이)	용 도	
	중 량	kg	출 품 수 량	
작 품 설 명				

본인은 제 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에 상기 작품을 출품 합니다.

년 월 일

출품자 : 인

제 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대회장 귀 하

제 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접수증

접수번호 호

출 품 내 역	주 소		출 품 자	
	작 품 명			
	수 량			

상기 작품명 및 수량을 제 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출품작으로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출품작 사진 및 설명서】

1. 출 품 작 :

2. 작품설명 :

[작 품 사 진]
(5" × 7") 이상

□ 출품 절차

- 출품자는 기한 내에 출품원서와 작품을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출품자 유의사항

- 출품은 1명당 2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부문별 각 2점 가능)
- 출품자의 규격은 전시 가능한 작품으로 합니다.
- 출품자는 주민등록상의 실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회수합니다.

□ 작품 반출

- 낙선작은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로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제 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출품 서약서

작 품 명	1.
	2.

본인은 「제 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에 출품한 작품을 단독/공동 제작하여 타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전사·판매를 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단, 학생의 졸업작품은 제외)임을 확인합니다.

심사결과 출품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차후에 사실과 상이함이 밝혀질 경우 입상을 무효화하고, 시상금은 반환하며 만·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성 명 : (인)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대회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 1325 호

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원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

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라북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1월 10일

남원시 훈령 제 374 호

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구성) 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안전경제건설 국 내에 두며,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실 전담인력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난발생과 응급조치 및 수습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관리
2. 재난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
3.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지원
4. 주요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재난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장 상황실 운영

제5조(상황실 운영 등)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4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1. 상황실장은 평일 주간에는 안전재난과장이 되며, 야간 및 휴무일에는 당

직책임관이 된다.

2. 상황반원은 평일 주간에는 안전재난과 소속 직원이 되며, 야간 및 휴무일에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황실장은 시장의 지휘를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연말연시의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은 09:00

부터 18:00까지, 야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시작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근무자와 함께 재난관리 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신고) 상황근무자는 근무시작 이후 지체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전파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① 상황근무자는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는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및 도 관련부서 등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나 팩스(FAX)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매일 1회 보고하는 “일일 상황”보고
2. 수시보고 :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실시간 수시보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하는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10조(기록유지) ① 상황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황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조치 요령, 비상연락망, 유관기관·단체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상황근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장비관리 및 점검

제12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각종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점검)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4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기간 및 인사우대) 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 승진 가점부여, 해외연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게 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근무환경 조성)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30분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당일 상황근무자는 30분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前)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근무시작 즉시 NDMS에 등록하여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신고
 - 전(前)근무자는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및 다음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평시 : “재난관리 일일상황” 보고서(06시 기준) 작성
 - 수시 : 재난 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최초 - 중간 - 최종)
4. 상황보고 및 전파
 - 시장, 부시장 및 담당국장에게는 상황실장 또는 상황근무자가 직접 보고
 - 유관기관 및 단체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FAX 등을 활용하여 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 외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단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p>000시 재난안전 일일 상황 - 2016. 00.00() 06:00 현재 -</p>	<p>재난안전 상황실 (000) 000-0000</p>
--	--	--

기상개황

[Empty box for weather status]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Empty box for disaster management status]

재난안전 예방 활동 및 훈련

○

[Empty box for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and training]

언론보도 주요사항 등

○

[Empty box for media reports and other major matters]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 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 1. 일시:
- 2. 장소:
-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작성 방법

-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일지

년 월 일(요일) : ~년 월 일() :

인계자	팀장	팀원
인수자	팀장	팀원
지시 사항	○ ○	
주요상황 (조치)	○	

○ 중요사항 상황관리

일 시	내 용
00.00(0) 00:00	<주요사고 관련>
00.00(0) 00:00	<화재 발생 관련>
00.00(0) 00:00	< AI, 구제역 관련>
00.00(0) 00:00	<교통사고 관련>
00.00(0) 00:00	<그 밖의 사항>

남원시 고시 제2017-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02월 10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 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예정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	남원시 향교동	도로	소로	2-13호	향교동 889-8 ~향교동 870	L=150m B=8.0m	2017. 2	남원시	
							2017. 8		

※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공 사 명 :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

연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분할 지번 (편입)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시	동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1	남원시	향교동	889-3	도로	13	889-3	13	남원시					
2	남원시	향교동	889-4	답	3	889-4	3	남원시					
3	남원시	향교동	889-7	대	40	889-7	40	남원시					
4	남원시	향교동	889-8	잡	46	889-8	46	남원시					
5	남원시	향교동	903-2	도로	10	903-2	10	이*윤	남원시 용정안길 ****(향교동)				
6	남원시	향교동	903-3	잡	122	903-6	110	남원시					
7	남원시	향교동	903-1	답	1765	903-4	70	남원시					
8	남원시	향교동	903-1	답	1765	903-5	62	남원시					
9	남원시	향교동	889-2	답	985	889-13	352	남원시					
10	남원시	향교동	889-11	답	188	889-15	78	남원시					
11	남원시	향교동	888-3	대	208	888-4	129	남원시					
12	남원시	향교동	882-13	대	341	882-16	113	양*택	남원시 용정안길 ****(향교동)				
13	남원시	향교동	882-6	대	278	882-14	66	양*택	남원시 용정안길 ****(향교동)				
14	남원시	향교동	872	전	397	872-1	42	양*택	남원시 용정안길 ****(향교동)				
15	남원시	향교동	874	전	116	874	116	양*택	남원시 용정안길 ****(향교동)				
16	남원시	향교동	882-7	대	159	882-15	16	남원시					
17	남원시	향교동	876	대	387	876-3	13	남원시					
18	남원시	향교동	870	대	307	870-1	159	남원시					
19	남원시	향교동	869	대	165	869-1	6	남원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공 사 명 :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세	성명	주소	
1	남원시 향교동	889-8 903-6	주택	블록+스레트+함석 (11.0m*6.0m)	66㎡		남원시				
			창고	블록+스레트 (6.0m*1.2m)	7.2㎡						
			보일러실	블록+함석 (2.3m*1.5m)	3.45㎡						
			현관	콘크리트+슬라브 (3.0m*2.0m)	6.0㎡						
			화단	콘크리트 (4.0m*2.0m)	8.0㎡						
소계			5건								
2	남원시 향교동	903-5	철망	H=1.5	9.0m		남원시				
			관정보호대	1.0m*1.0m	1식						
			소형관정	전기포함	1식						
소계			3건								
3	남원시 향교동	889-13	비닐하우스	파이프+비닐 (24.0m*6.0m)	144㎡		남원시				
			소형관정		1식						
소계			2건								
4	남원시 향교동	889-15 888-4	비닐하우스1	파이프+비닐 (18.0m*5.0m)	90㎡		남원시				
			비닐하우스2	파이프+비닐 (13.0m*5.0m)	65㎡						
소계			2건								
5	남원시 향교동	882-16 882-14	보일러실	블록+함석 (1.5m*1.5m)	2.25㎡	남원시 용정 안길 *** (향교동)	양*택				
			계단	콘크리트 (4.0m*1.0m)	1식						
			정화조	콘크리트 (3.0m*2.0m)	1식						
			창고및화장실	블록+슬라브 (2.5m*2.5m)	6.25㎡						
			창고2	블록+함석 (2.5m*2.5m)	6.2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세	성명	주소	
5	남원시 향교동	882-16 882-14	까데기	철제+칼라강판 (8.0m*4.3m)	34.4㎡	남원시 용정 안길 ***-*** (향교동)	양*택				
			철대문	4.0m*H2.5m	1식						
			수도간		1식						
			소각로	1.0*1.0	1식						
			화단	자연석+조경석 (10*6)/2+(15*3)/2	52.5㎡						
			철쭉		20주						
			감나무		1주						
			동백		1주						
			라일락		1주						
			수국		1주						
			주목		1주						
			단풍		1주						
수목및돌담장	사철, 무궁화 등	12.0m									
소계			18건								
6	남원시 향교동	876-3	창고	블록+경량철골 조칼라강판 (11.5+8.0)/2*7	68.25㎡	남원시					
			창고	조립식(내부)	18㎡						
			담장1	H=1.6m	10m						
			담장2	H=1.6m	10m						
			대추나무		1주						
			감나무		1주						
소계			6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 황 및 구 조	편입 수 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성명·주소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 명세	성 명	주 소	
7	남원시 향교동	870-1	화장실 (난간포함)	블록+슬라브	6.0㎡		남원시				
			창고	철골+강판	31.2㎡						
			계단	콘크리트 (5.0m*1.0)	1식						
			담장	목재	3.0m						
			재활용창고	파이프+함석 (5.0m*4.0m)	20.0㎡						
			담장	파이프+함석 (2.0m*2.5m)	5.0㎡						
			사철나무		1주						
			남천나무		1주						
			산딸나무		1주						
소계			9건								

남원시 공고 제2017 - 1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0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10.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2. 10. ~ 2017. 02. 24.
3. 납부기한 : 2017. 02. 28.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0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 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본세	공고사유	간주납기
114001 2017 01 1 250 000024	660227-*****	이**철	9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250 000094	660227-*****	이**철	9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250 000247	840524-*****	조**현	9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250 000364	640903-*****	이**미	9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250 000415	590930-*****	이**숙	9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633	740912-*****	정**일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677	211371-*****	백**대**농**산**영**조** 법**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766	211311-*****	주**회**허**미	9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803	830710-*****	조**철	9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808	210111-*****	강**석**	18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810	210111-*****	강**석**	18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811	210111-*****	강**석**	18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812	210111-*****	강**석**	18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903	740912-*****	정**일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908	110111-*****	일**주**건**주**회**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916	670427-*****	김**희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921	210111-*****	주**회**금**이**지	27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0996	110111-*****	일**주**건**주**회**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1004	211311-*****	농**회**법**주**회**김** 각**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10 001009	760222-*****	김**주	9000	주소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30 001536	680403-*****	차**호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30 001537	211314-*****	성**중**개**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583	211311-*****	농**회**법**자**미**중** 처**장**식**사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584	211311-*****	농**회**법**자**미**중** 처**장**식**사	4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585	211311-*****	농**회**법**자**미**중** 처**장**식**사	4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587	211311-*****	농**회**법**자**미**중** 처**장**식**사	27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610	540618-*****	김**자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623	750513-*****	장**진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647	211311-*****	농**회**법**자**미**중** 처**장**식**사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724	741102-*****	강**희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766	211311-*****	주**회**가**이**지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767	211311-*****	주**회**가**이**지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771	211311-*****	농**회**법**자**미**중** 처**장**식**사	18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40 001774	211336-*****	남**농**협**조**	12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350 001942	211311-*****	(주)서**콘**리**	18000	수취인미거주	20170228

114001	2017	01	1	370	002356	200114-*****	유**회**태**에**지*호	27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370	002357	200114-*****	유**회**태**에**지*호	27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370	002358	200114-*****	유**회**태**에**지*호	27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370	002359	200114-*****	유**회**태**에**지*호	27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370	002360	200114-*****	유**회**태**에**지*호	27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390	002836	670705-*****	임**택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90	002838	511002-*****	박**만	9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390	002868	670705-*****	임**택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400	003017	630123-*****	안**열	27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420	003374	480715-*****	조**심	9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420	003414	211311-*****	주*타**탄**어	27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420	003515	770703-*****	권**남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420	003525	211314-*****	농**회**법**유**회**국**우**	12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420	003535	540818-*****	전**남	9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420	003575	670301-*****	정**예	9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450	003713	551226-*****	양**희	27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450	003716	551226-*****	양**희	27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460	004069	211371-*****	지**산**향**고**쇠**수**농**	12000	수령인없음	20170228
114001	2017	01	1	460	004086	211371-*****	영**조**법**지**산**내**러**	12000	수령인없음	20170228
114001	2017	01	1	460	004092	211371-*****	영**조**법**지**산**내**러**	9000	수령인없음	20170228
114001	2017	01	1	460	004104	521008-*****	홍**삼	9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460	004155	750602-*****	김**수	12000	수취인미거주	20170228
114001	2017	01	1	470	004318	790205-*****	이**용	9000	수령인없음	20170228
114001	2017	01	1	470	004555	740106-*****	김**기	9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470	004602	590819-*****	김**경	9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470	004673	998383-*****	농**회**법**유**회**국**토**	12000	수령인없음	20170228
114001	2017	01	1	470	004676	560828-*****	고**란	9000	주소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470	004730	660403-*****	서**선	9000	수취인미거주	20170228
114001	2017	01	1	470	004736	611202-*****	신**경	9000	수령인없음	20170228
114001	2017	01	1	470	004741	670420-*****	박**숙	9000	수령인없음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4874	670824-*****	변**원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4906	211314-*****	고**종**건**	30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4921	214311-*****	진**건**	30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4976	780628-*****	전**희	7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5012	211314-*****	고**종**건**	22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5020	630210-*****	전**옥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5048	850907-*****	이**영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5075	730828-*****	박**열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5076	211314-*****	남**뉴**	22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10	005131	211314-*****	남**뉴**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20	005195	760611-*****	최**영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20	005314	201114-*****	삼**렌**카	34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20	005577	530601-*****	양**판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20	005625	840627-*****	김**영	7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20	005783	211314-*****	유**회**남**넷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20	005796	890425-*****	김**모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20	005807	600818-*****	고**규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20	005826	650705-*****	김**희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40	006076	211314-*****	유**건**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40	006121	211311-*****	주**회**허**미	22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40	006253	581105-*****	이**한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40	006296	550925-*****	양**운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40	006331	211314-*****	유**회**우**이**씨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40	006377	700827-*****	임**이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40	006421	112302-*****	바**샘**교**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40	006422	112302-*****	바**샘**교**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6672	530715-*****	이**희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6727	500904-*****	김**목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6808	600422-*****	허**봉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6875	500904-*****	김**목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6925	700103-*****	한**수	7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6928	661204-*****	임**순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7042	951229-*****	양**식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7063	211314-*****	농**회**법**참**	225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7082	550815-*****	김**순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7086	211314-*****	유**회**지**지**푸**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7096	750125-*****	김**수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7104	530112-*****	조**희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50	007105	530112-*****	조**희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60	007335	161411-*****	주**회** **토**설	30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60	007458	210111-*****	효**개**주**회**	30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7506	730310-*****	오**권	7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7649	211311-*****	파**테**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7730	210114-*****	대**건**	30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7743	211314-*****	영**건**	30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7928	211314-*****	성**이**씨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7971	681007-*****	윤**순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053	214414-*****	유**회**부**	90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087	600105-*****	한**석	22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131	670301-*****	한**애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139	211314-*****	유**회**브**엘**동**중**	15000	이사감	20170228

				컨**팅			
114001	2017 01 1 570 008299	210114-*****	전**기**유**회**	22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302	710128-*****	최**경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304	210114-*****	전**기**유**회**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305	690128-*****	박**현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378	660907-*****	이**재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397	671225-*****	배**호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407	671225-*****	배**호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447	210114-*****	전**기**유**회**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448	214414-*****	송**	22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70 008529	781112-*****	김**수	4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8995	570304-*****	조**길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8998	670411-*****	이**로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016	840303-*****	황**혁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068	641128-*****	오**정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104	881217-*****	한**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172	691125-*****	김**식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195	720919-*****	박**하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204	691125-*****	김**식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325	720912-*****	박**용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372	680526-*****	이**자	75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404	124411-*****	청**건**	30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538	700821-*****	서**훈	1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637	871227-*****	최**식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713	590906-*****	조**자	22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730	811103-*****	송**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738	680802-*****	안**숙	75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825	470121-*****	김**원	75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935	205011-*****	우**종**건**	45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944	680802-*****	안**숙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09982	591008-*****	형**님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10020	211314-*****	(**) **성**업	34000	이사감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10169	670301-*****	정**예	15000	수취인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10173	720604-*****	박**섭	15000	기타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10200	741228-*****	김**애	22500	주소불명	20170228	
114001	2017 01 1 590 010201	740905-*****	박**진	7500	주소불명	20170228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본세	공고사유	간주납기
114001 2016 01 1 250 000055	480823-*****	유**협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250 000110	591003-*****	이**재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250 000143	112180-*****	전**이**양**대**파**산**종**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250 000246	631018-*****	기**욱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250 000452	590930-*****	이**숙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10 000588	211371-*****	백**대**농**산**영**조**법**	12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10 000670	204414-*****	유**회**한**건**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10 000720	204614-*****	유**회**용**산**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10 000740	211311-*****	정**산**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20 000900	134811-*****	남**에**지	27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40 001240	550317-*****	노**택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350 001372	211311-*****	풍**물**시**트**업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50 001542	211311-*****	(주)서**콘**리**	18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60 001596	200111-*****	건**팜**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70 001750	211311-*****	태**레**콘	12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70 001751	211311-*****	유**산**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390 002249	511002-*****	박**만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400 002370	211314-*****	유**회**금**물**	12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420 002734	211311-*****	주**타**탄**어	27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20 002836	770703-*****	권**남	12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50 002980	551226-*****	양**희	27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50 002983	551226-*****	양**희	27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60 003292	211371-*****	영**조**법**지**산**내**러**	12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60 003298	211371-*****	영**조**법**지**산**내**러**	9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460 003368	491104-*****	소**남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470 003522	211311-*****	세**환**엔**니**링	9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20 004636	211371-*****	지**산**은**춘**골**농**합**인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20 004674	210114-*****	유**회**신**토**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20 004914	780219-*****	박**선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20	211314-*****	유**회**남**넷	15000	이사감	20160229

004945					
114001 2016 01 1 520 004979	211311-*****	주**회**성**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40 005074	910314-*****	강**구	225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40 005437	581228-*****	서**만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50 005876	600422-*****	허**봉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50 005933	760110-*****	양**기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50 006153	211314-*****	농**회**법**참**	225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60 006415	510212-*****	최**길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6654	211311-*****	파**테**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6676	110111-*****	선**애**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6723	200111-*****	일**종**건**	4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6742	210114-*****	대**건**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6756	211314-*****	영**건**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6927	701201-*****	강**호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6929	154511-*****	지**이**이**텍	4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6966	701201-*****	강**호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7042	690317-*****	유**현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70 007170	211314-*****	대**물**	4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7626	540405-*****	정**화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124	211371-*****	지**산**브**드**농**합**인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125	211371-*****	지**산**브**드**농**합**인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126	211371-*****	지**산**브**드**농**합**인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132	211371-*****	지**산**브**드**농**합**인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155	691125-*****	김**식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192	691125-*****	김**식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193	211314-*****	대**건**	4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211	214814-*****	조**건**유**회**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271	740727-*****	강**희	225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334	211311-*****	주**회**장**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414	124411-*****	청**건**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701	211314-*****	유**회**만**산**	4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797	141311-*****	제**에**건**산** **식**사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817	211311-*****	농**회**법**주**회**남**허**	225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839	214814-*****	성**건**유**회**	30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8866	211314-*****	유**회**신**	15000	이사감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9066	560225-*****	김**례	15000	주소불명	20160229
114001 2016 01 1 590 009118	035154-*****	남**에**다**아**회	15000	주소불명	20160229

남원시 공고 제2017 - 2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0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2. 10 ~ 2017. 2. 24.
3. 납부기한 : 2017. 2. 28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양*선	75****-*****	140002-2017-01-2-***-7	164,610	수취인부재	2017. 2. 28
주식회사 삼*건*	20****-*****	140003-2017-01-2-***-5	1,293,210	폐문부재	2017. 2. 28

남원시 공고 제2017 - 2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0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6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2. 10 ~ 2017. 2. 24.
3. 납부기한 : 2017. 2. 28
4. 공시송달내용

2016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6년 10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윤*조	72****-*****	140001-2016-10-2-****-1580	2,099,570	수취인불명	2017. 2. 28

남원시공고 제2017-22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남 원 시 장

□ 공인 신조 등록 [민원과]





1. 공인 등록사유 : 민원발급 인증기 교체
2. 공인 등록 일 : 2017. 2. 9.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 원 시 장 인 민원실전용(5)	3.0cm×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특수고무)		민원과
등록	남 원 시 장 인 민원실전용(6)	3.0cm×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특수고무)		민원과
등록	남 원 시 장 인 민원실전용(7)	3.0cm×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특수고무)		민원과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 원 시 장 인 민원실전용(8)	3.0cm × 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특수고무)		민원과

□ 공인 폐기 [민원과]

1. 공인 폐기사유 : 민원발급 인증기 교체
2. 공인 폐기일 : 2017. 2. 9.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남 원 시 장 인 민원실전용(1)	3.0cm × 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특수고무)		민원과
폐기	남 원 시 장 인 민원실전용(2)	3.0cm × 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특수고무)		민원과
폐기	남 원 시 장 인 민원실전용(5)	3.0cm × 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특수고무)		민원과
폐기	남 원 시 장 인 민원실전용(6)	3.0cm × 3.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특수고무)		민원과

남원시 공고 제 2017 - 230호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공고

1995. 12. 28.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이 현재까지 장기 미개발 방치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기위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0.

남 원 시 장

1. 온천지구 개요

- 가. 온 천 명 :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 나. 위 치 :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산46번지 일원
- 다. 지정면적 : 354필지 / 1,008,800m²
- 라. 온천발견 신고 및 수리 : 1993. 9. 24 / 1994. 9. 7.
- 마.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1995. 12. 28.

2. 의견제출 방법

- 가. 제출기간 : 2017. 2. 10. ~ 2017. 2. 24. (14일간)
- 나. 제출방법 :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장소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 (도통동) (☎ 063-620-6473)

3. 기타사항

- 가.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청취 공고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며, 주소·거소불명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